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안내

(’19. 4. 24.(수), 한국보육진흥원)

1. 평가 개요

① 추진 방향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9. 6월부터 의무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질 수준 확보를 위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 ’19. 5월까지 평가인증에 참여신청(8월 현장평가)하여 진행하는 어린이집은 인증제 기준을 적용함
- 평가 사각지대 해소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미인증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통보하고, ’19년도에 한해 평가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

②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 정당한 이유 없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기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

2. 평가 과정

①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 평가대상 선정기준
 -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인증 유효기간(평가주기)을 연계하여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
- 미인증 어린이집
 - * '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병행하며, 희망신청을 하지 않은 전체 미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9년 내 평가대상 통보 예정임

<미인증 어린이집 평가대상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희망신청 완료 어린이집
- 2순위: 평가제 시행 시 참여 희망기수 응답한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40(2019.02.14.) 「평가제 시행 대비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 조사협조요청」 조사 결과 반영
- 3순위: 평가인증 참여이력 없는 어린이집
- 4순위: 평가인증 참여이력 있는 어린이집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 희망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대상)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 희망신청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을 평가대상 통보 예정
- * (신청기간) '19. 4. 24.(수) ~ 28(일) (**※ 선착순 모집**)
- *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신청 메뉴에서 희망하는 기수에 참여신청서 작성·제출

- * 진행일정

기수	신청	모집 정원	진행일정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1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1기	4.24. ~ 4.28.	300	8월	9월	10월	11월
2기	4.24. ~ 4.28.	500	9월	10월	11월	12월
3기	4.24. ~ 4.28.	300	10월	11월	12월	'20. 1월
4기	4.24. ~ 4.28.	500	11월	12월	'20. 1월	'20. 2월
5기	4.24. ~ 4.28.	300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 신청기간 및 진행일정, 모집정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주기 외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초과 휴지, 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평가시기를 정하여 대상 선정

○ **평가대상 통보시기 및 방법**

- (통보시기) 대상통보(1차)는 현장평가일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일 기준 2개월 전 통보함
 - ※ 추진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인증 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평가대상 통보(인증유효기간 8개월 전 대상통보)

※ 인증유효기간이 '19년 11월 ~ 20년 3월까지인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시기를 '20년 2월 또는 4월로 조정 가능(선착순으로 선정)

- 미인증 어린이집은 현장평가일 기준 6개월 전 평가대상 통보함
- 신규개원(개원일), 대표자 변경(변경인가일), 6개월 초과 휴지(재개일), 행정 처분·법위반(처분일) 등 사유 발생 시 1년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를 진행하도록 대상통보
 - * 신규개원, 변동사항 발생 기관에서 1년 이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행정처분 제외)
- 소재지 변경(변경인가일) 시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를 진행하도록 대상통보
 - * 기존 평가등급(점수)을 유지하되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 진행
- (통보방법)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시·도에 평가대상을 통보함
 - (평가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어린이집으로 대상통보하며, 1차 대상통보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확인을 회신해야 함
 - (지자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매월 시·도로 평가대상 어린이집 명단 통보하며,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로 명단을 통보함. 시·군·구에서는 관할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평가 안내 및 관리(품질변동 및 행정처분 발생 사항 등 관리)

구분	통보시기	한국보육진흥원	지자체	어린이집
대상통보 (1차)	현장평가 6개월전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평가대상 통보 및 평가일정 등 안내 - 지자체에 평가대상 어린이집 명단 통보	평가대상 어린이집 안내	평가대상 확인 (10일내)
확정통보 (2차)	현장평가 2개월전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업무연락)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평가대상 확정통보 및 평가일정 등 안내 - 지자체에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	평가대상 어린이집 관리	평가준비

○ 평가 진행일정

평가 기수	참여대상	대상통보 (1차)	확정통보 (2차)	진행일정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1개월)	현장 평가 (1개월)	종합 평가 (1개월)	결과 통보
19년 1기	2016. 신규인증 6기	4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2016. 재인증 7기						
	(재참여)2016. 2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19년 2기	2016. 신규인증 7기	5월 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재인증 8기						
	(재참여)2016. 3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19년 3기	2016. 신규인증 8기	5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1월
	2016. 재인증 9기						
	(재참여)2016. 4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19년 4기	2016. 신규인증 9기	6월	10월	11월	12월	'20. 1월	'20. 2월
	2016. 재인증 10기						
	(재참여)2016. 5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19년 5기	2016. 신규인증 10기	7월	11월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2016. 재인증 11기						
	(재참여)2016. 6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20년 1기	2016. 재인증 12기	8월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20. 4월
	(재참여)2016. 7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20년 2기	2017. 재인증 1기	9월	'20. 1월	'20. 2월	'20. 4월 초	'20. 4월	'20. 5월
	(재참여)2016. 8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20년 3기	2017. 신규인증 1기	10월	'20. 2월	'20. 3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17. 재인증 2기						
	2017. 재인증 3기						
	(재참여)2016. 9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20년 4기	2017. 신규인증 2기	11월	'20. 3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 7월
	2017. 재인증 4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20년 5기	2017. 신규인증 3기	12월	'20. 4월	'20. 5월	'20. 6월	'20. 7월	'20. 8월
	2017. 재인증 11기						
	미인증어린이집 선정						

* 평가 진행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시기 조정)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 가능
- (사유) 확정통보(2차) 월로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신청기간) 대상통보일(1차)로부터 익월 1개월 내 조정 신청
-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조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결과확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어린이집에 통보

② 1단계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지자체에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법적 사항 준수여부 및 행정처분 발생이력, 이행완료 여부 확인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확인대상)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 (확인주체)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자체(시·군·구)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 확인
 - (사전점검사항)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지자체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평가에 반영(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구분	확인내용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육실의 설치기준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위반이력사항) 확정통보일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둬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제출대상)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를 구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제출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자체점검보고서 전산 입력, 제출

- (제출내용) 평가요소별 점검결과(Y/N) 작성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기피 등으로 시정 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③ 2단계 : 현장평가

- (대상)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완료 어린이집
 -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 거부, 방해, 기피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4의6호)
- 현장평가 진행
 - (주간공지) 현장평가일 1주일 전에 현장평가 주간 공지(1주), 평가일은 미고지
 - (관찰자 파견) 어린이집 1개소당 현장관찰자 2인(정원 99인 이하), 3인(정원 100인 이상) 파견
 -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 (현장평가 진행) 관찰, 문서(기록), 면담을 통해 현장평가 진행, 현장평가 종료 전 평가결과에 대해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확인서 확인한 후 서명
 - ※ 현장평가 당일 영유아 출석인원(현원의 $\frac{2}{3}$ 이상) 미달 시 평가 중단, 사유 확인 후 현장관찰자 재파견함
 -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여부 확인
 - (확인항목) 영유아 채용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사항
 - (결과활용)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④ 3단계 : 종합평가

- (종합평가 대상) 현장평가 완료 어린이집
- (종합평가 절차) 소위원회(1단계) → 종합평가위원회(2단계)
- 등급결정
 -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평가과정 중 행정처분 사항 등을 반영함

- 평가과정에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평가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

- * 위반이력사항 발생 어린이집은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함
- * 다만, 법위반·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

기관등급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모두 충족)	3년
B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3년
C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2년

※ 사전점검사항 및 운영기준 미준수, 행정처분 및 법 위반 어린이집은 최하위(D) 등급 부여

5 결과공표

- (결과통보)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개별 통보
- (소명) 평가참여 어린이집은 평가결과(A~D등급)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심사위원회를 통해 의결함
 - (신청방법) 평가결과 통보일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 **(결과공표)** 결과통보 후 평가결과, 평가 참여 이력 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익월 1일부터 공표
 - 등급 구분 및 정의,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관할 지역 및 전체 어린이집과의 등급비교 등
 - * 단, 평가제 적용 시점 이후의 이력부터 결과공표에 반영함. 현행 인증제에 따른 사항은 기존 공시 내용을 유지함
- **(평가주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을 부여함

⑥ **평가거부(또는 방해, 기피) 시 조치**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 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 대상임
- **평가거부(또는 방해, 기피) 사유**
 - 대표자 또는 원장이 명시적으로 평가, 점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평가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미동의 한 경우)
 - 평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등)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관찰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보건복지부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평가대상 확인 및 기본사항확인 거부,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등 평가 거부·방해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현장평가 시 방해 또는 기피로 인해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관찰자가 확인서 작성,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날인 후 보건복지부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 * 평가거부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사유를 현장관찰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관찰자 2명이 연대하여 서명함으로써 종료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평가대상으로 재통보함

3. 평가 후 관리

① 평가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평가 후 매년 1회 어린이집 스스로 자체점검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보고서 제출(A, B등급)
 -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확인점검 실시
 - ※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를 구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사후 방문지원) C, D등급 어린이집은 사후 방문지원(의무 컨설팅) 후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지도점검 연계)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대상 우선 선정
 - (확인점검) 평가 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수준 확인
- (대상 및 사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단기간 교사의 이직이 잦은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
-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 현저히 등급이 낮아진 경우 재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 가능

2 품질변동에 따른 관리

- (법 위반 등에 따른 관리)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D) 등급으로 조정
 -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등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처리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등급조정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한 경과 시 최종 등급 조정 확정 및 관련 조치함
 - ※ 등급조정 처분 시점부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효력발생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품질변동에 따른 관리) 대표자 변경*, 6개월 초과 휴지 등으로 인해 품질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1년 경과 시점 현장평가 진행. 정보공시에 '평가 예정'어린이집으로 표기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제3자간 대표자간 변경 등 대표자 변경 사유 모두 포함
 - ※ 단, 품질변동사항 중 소재지 변경은 기존 평가등급(점수)을 유지하되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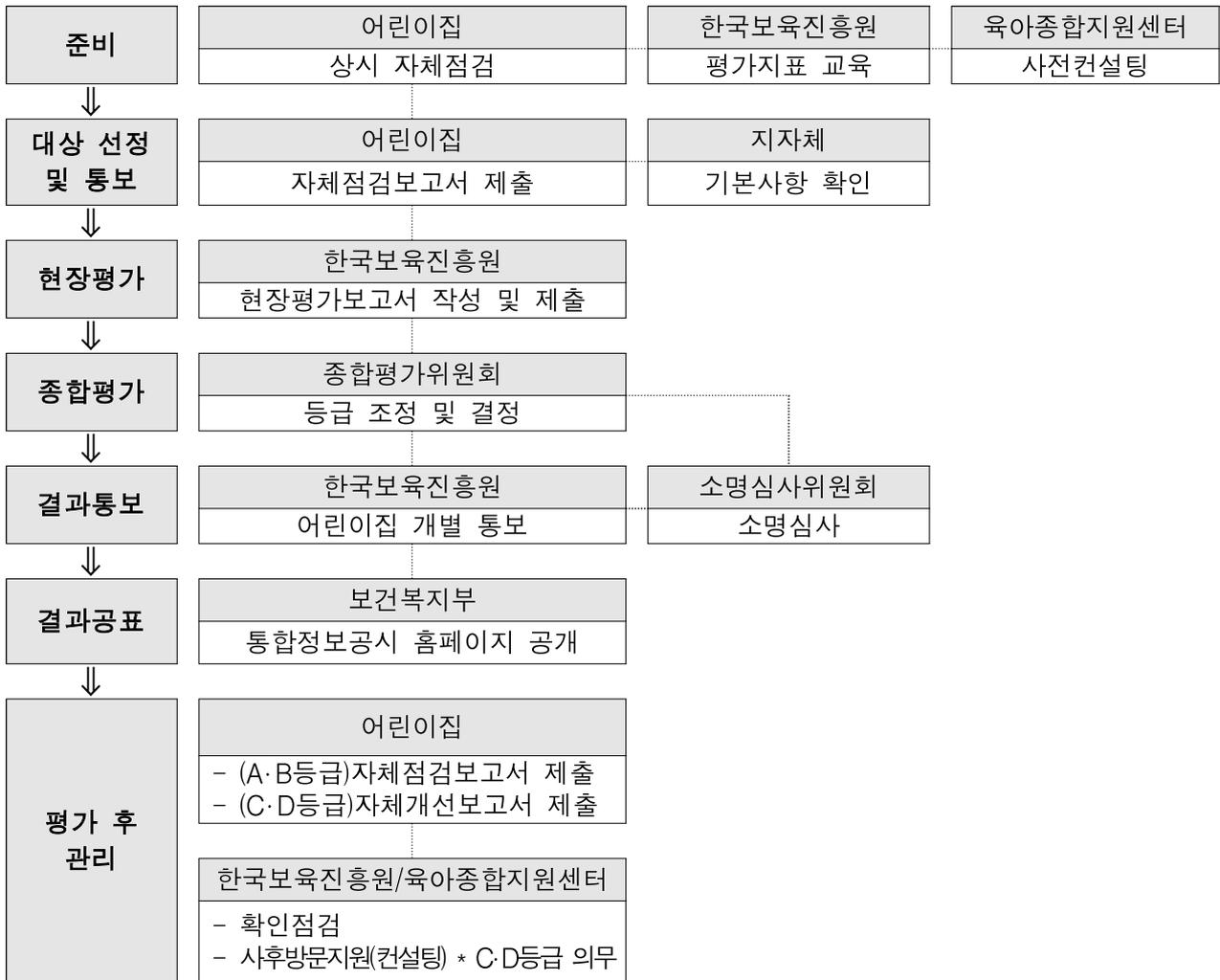
4. 경과조치

- (적용 대상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에 따른 운영체계 및 지표는 2019년 9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함
 - 2019년 8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를 적용

하고 확인방문은 2019년 5월 신청 어린이집까지에 한해 적용함

- (평가 후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종료 처리함

<참고: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붙임 1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비교(운영체계, 지표)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39,219개소의 81%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어린이집(39,21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미인증 어린이집(7,521개소) 우선 평가단, 신규개원, 대표자변경, 행정처분, 6개월이상 휴지 어린이집은 1년경과 후 평가실시(소재지 변경의 경우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 진행)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영역, 21지표, 79항목 * 급·간식 위생 필수요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 1, 필수요소 8 - 지표별 항목수 균형배치(지표당 평균 3~4개 항목)
평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1개월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 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 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 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시 A등급 불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 (유효기간) 3년(A등급 1년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등급(A, B, C,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4개영역 우수), B등급(3개영역 이하우수, 개선필요가 없는 경우) ⇒ 3년 주기 평가 C등급(개선필요 영역이 1개인 경우), D등급(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2년 주기 평가 (1년 사후방문지원(컨설팅), 6개월 운영 후 평가대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참여, 재평가 폐지
사후 관리 및 등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정원·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A, B등급) - 사후방문지원(컨설팅, C, D등급 의무 실시) - 지도점검연계(2회 연속 D등급 지도점검대상 우선 선정) - 확인점검(민원발생, 법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단기간 내 교사의 이직이 잦은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확인방문 : 폐지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등급 정의를 포함한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

영역	지표	항목	
I.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2)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3)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줌 4)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모두 충족	
		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2)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2개, 보통: 1개, 개선필요: 0개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 계획을 수립한다. 1)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2)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보육계획을 반별로 수립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2)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3)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4)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줌 ※ 만3세 이하의 중일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 시간을 계획 및 실행하며, 만4, 5세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낮잠 또는 휴식 시간을 운영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모두 충족
			3.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매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을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6시간 이하 이용 영아: 매일 1시간 이상 - 6시간 초과 이용 영아 및 유아: 매일 2시간 이상 ※ 기준시간 내에서 매일 오전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2) 일과를 시간 단위로 분절하여 교과목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4.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하여 운영한다. 1) 매일 바깥놀이를 기준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미세먼지 등으로 바깥놀이가 어려울 경우, 실내 대근육활동을 포함한 자유놀이로 대체 가능 ※ 영아: 만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만 1, 2세는 매일 30분 이상 ※ 유아: 매일 1시간 이상 ※ 장애아전문: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5. 특별활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은 영유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2)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자유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음 3) 특별활동은 오후에 운영됨		

영역	지표	항목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일반) 3개 모두 충족 / 특별활동 미실시) Y로 평정	
		6. 장애영유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일과 중에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계획, 제공하고 있음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포함)를 장애영유아가 속해 있는 반의 일과와 연계하거나 일과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 ※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된 경우에 해당	
지표등급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일반) 우수: 5개, 보통: 3-4개, 개선필요: 2개 이하 장애) 우수: 6개, 보통: 3-5개, 개선필요: 2개 이하	
1-3. 놀이 및 활동 지원		1. 교사는 놀이와 활동이 영유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1)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영아: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2)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와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격려함 3)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1) 교사는 실내 자유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3)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3.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수준, 연령,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자료를 준비함 2)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및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3) 놀이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가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14. 영유아간 상호작용 지원		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1)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함 2)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며 수용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또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1)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2)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 ※ 영아: 교사는 영아가 또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아의 행동이나 말을 또래에게 묘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3.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1)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음 2) 교사는 영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가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격려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4.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해결방식을 사용한다. 1) 교사는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감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 2)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연령에 적합하게 개입함 ※ 유아: 교사는 유아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함 ※ 영아: 교사는 문제 상황에 적절히 개입하여 영아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아의 행동에 대해 설명함	
		3)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 해결방안을 사용하도록 격려함(요청, 교환, 함께 쓰기, 반갈아하기)	

영역	지표	항목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4개, 보통: 2-3개, 개선필요: 1개 이하	
	1-5. 보육과정 평가	1. 반별 보육일지에 하루일과 및 놀이실행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 내용을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한다. 1)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음 2) 보육일지에 평가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 다음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2. 개별 영유아의 일상생활, 실내외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 1)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기록함 2) 영유아 관찰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함 3)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지원, 부모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 4) (장애영유아) 개별 장애영유아의 교육진단과 발달평가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및 참고자료를 구비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일반) 3개 모두 충족 / 장애) 4개 모두 충족	
		3.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1)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2)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1영역 등급			(우수) '우수' 지표가 4개 이상(필수 포함),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II.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2-1. 실내공간 구성 및 운영	1. 보육실 내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1)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반영한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흥미영역 또는 놀이영역은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2.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1) 실내 시설 및 설비가 영유아의 연령 및 신체에 적합한 크기와 높이로 되어 있어 영유아 스스로 사용하기에 용이함 2) (영아) 기저귀 갈이대, 수유공간 등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 공간에 수유와 기저귀 같이 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3) (장애아전문) 실내 시설 및 설비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도구가 마련되어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일반) 2개 모두 충족 / 영아가 없는 경우) 1개 충족 장애아전문) 3개 모두 충족 / 영아가 없는 경우) 2개 모두 충족		
	3.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1)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유희실, 도서공간, 양호공간, 식당 등)이 어린이집 내에 두 군데 이상 마련되어 있음 2)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음 3) 영유아의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4.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1)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창고나 자료실, 베란다 등)이 있고,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명칭, 내용, 관련영역 등을 표시하여 보관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지표등급		우수: 4개, 보통: 2-3개, 개선필요: 1개 이하

영역	지표	항목		
II.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2-2. 실외공간 구성 및 운영	1. 옥외놀이터 등을 구비하고 있다. 1)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음 2)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중 1개		
		2.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1)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가 구비되어 있음 2) 놀이기구 또는 놀이 및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 3)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3.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1)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짐 2) 바깥놀이 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2-3. 기관 운영	1. 모든 반을 편성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1) 모든 반이 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혼합연령반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고 있음 2) 연령별 반 규모는 만 0세의 경우 3배, 만 1세 이상의 경우 2배를 초과하지 않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2.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한다. 1)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방법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함 2)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부모에게 안내됨 3) 17시 이후 보육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자유놀이 등이 운영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3.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1) 모든 신규 보육교직원에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4.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적응과정에 대한 관찰기록이 있음 2)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4개, 보통: 2-3개, 개선필요: 1개 이하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1.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1)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2) 부모가 부모모임, 자원봉사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3) 부모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2.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한다. 1) 평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하고 있음 2)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 관리함 3)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실시한 기록이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2영역 등급	(우수) '우수' 지표가 3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영역	지표	항목				
Ⅲ. 건강 · 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함 2)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함 3)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함 4) 실내외 공기 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2. 실내외 공간과 설비를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한다. 1)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2)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설비, 전기설비 등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3)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을 위험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함 4)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3.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1)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2)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3) 보육실 내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4)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Ⅲ. 건강 · 안전	3-2. 급·간식	1.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함 2)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양, 크기, 맛, 조리형태 등)을 제공함 3) 인스턴트 식품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함 4)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필수)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2) (필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3) 조리실 공간(바닥, 벽, 천장 등)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가전 등)를 청결하게 유지함 4) 식기류(컵 등)와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 포함)		
				3. 조리 및 배식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2) 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3) (필수)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4)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 포함)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1)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2)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3)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 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함 4)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2.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1)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을 구비함 2) 교사는 일과 중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함 3) 투약의뢰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투약보고를 함 4) 비상약품을 용도별로 구비하여 유효기간 내로 관리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영역	지표	항목		
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지표등급	3.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1)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 2)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3)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수칙을 수립하여 실천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3.4. 등·하원 안전	1. 교사는 영유아의 출석을 확인하며 인계규정에 따라 귀가지도를 한다. 1)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음 2)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받은 귀가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음 3) 교사는 매일 일과를 시작할 때 영유아의 등원 여부를 확인함 4) (필수)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 포함)	
			2.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1)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함 2) 교사는 일과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함 3) 통합보육 시 담당교사는 담당 영유아의 인원과 특이사항을 파악함 4) (필수)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 포함)	
			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1) 차량에 안전수칙, 영아용 보호장구, 개별 안전띠, 차량용 소화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비상약품을 구비함 2) 운전자는 매일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함 3)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4) (필수)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 포함)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2)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3) 영유아가 놀잇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4)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1) (필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학대 예방교육 포함) 2)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3)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4) (필수)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 포함)
				3. 안전 설비를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1) 비상사태를 대비한 피난설비(피난구 유도등)를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2) 비상사태를 대비한 소화설비(소화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3) 비상사태를 대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등)를 비상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4) 보육교직원은 안전시설 및 설비(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4개 중 3개 이상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3영역 등급	(우수) '우수' 지표가 4개 이상(필수 포함),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			
IV.	4.1.	1.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영역	지표	항목	
교직원	원장의 리더십	1)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2) 원장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3)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2.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1)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임	
		2)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3. 원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	
		2)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있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음	
		3)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교직원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1.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1)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보육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2. 보육교사를 위한 개인사물함과 업무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1)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음	
		2) 보육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 지원 설비(컴퓨터, 프린트 등)를 마련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3.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1)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교직원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1)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음			
2)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3) 보수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3개 모두 충족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내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이 마련되어 있음			
2) 복지혜택이 보육교직원에게 골고루 제공됨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교직원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1.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요구를 고려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2개 모두 충족	
		2.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역	지표	항목
		1) 보육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이 보육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3.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평가가 보육교사별로 연 1회 이상 이루어짐 (평가항목 Y 충족 기준) 1개 충족
	지표등급	우수: 3개, 보통: 2개, 개선필요: 1개 이하
4영역 등급		(우수) '우수' 지표가 3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가 1개 이상